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09. 12 .15(화) 석간		
배포일시	2009. 12. 14(화) 16:00	담당부서	재정정책국 재정사업평가과
담당과장	권광호(2150-5430)	담당자	김보열 서기관 (2150-5431)

제목 : 부실설계·감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

-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, '10. 1. 1 부터 시행

- 정부는 재정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함
 - 부실설계·감리는 시설공사 시공과정에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유발하여 총사업비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
- 그동안 부실설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 왔으나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었으며
 - 부실설계에 대한 제재도 제재대상이 설계용역사업자에 국한되는 등 제한적이었고 제재실적도 미미
- 따라서 정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하여
 - 감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
 - 법정 수탁기관*이 설계 및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도 관련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

*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공공기관

- 반면 부실설계가 지질·지반조사 등 기본조사의 부실에 일부 원인이 있는 점을 감안,
 - 연약지반·암반 등으로 기본조사비용이 늘어날 경우 총사업비에 조사에 필요한 실비를 반영하도록 함

- 정부는 그 외
 - 시공중인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
 - 물가변동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우선 조치한 후 사후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 보고토록 함
 - 공공부문에 대한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
 - 민간선투자 인센티브율을 초과시공한 대가금액의 4% 또는 국고채(3년물) 평균수익률 중 큰 값으로 상향 조정하고
 - 현재 6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3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로 대상을 확대
 - 재정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금년도 한시적으로 적용한 자율조정 한도액*(낙찰가의 10%)의 적용유예기한을 6개월간 연장('09.12.31→'10.6.30)
 - * 각 부처가 총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한도금액

-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

기획재정부 대변인

□ 도입목적 : 대형투자사업의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·관리

□ 근거규정

○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시행령 제21조

○ 총사업비 관리지침

□ 대상 사업 : 사업기간 2년 이상 건설사업

○ 토목사업 : 300억원 이상 / 건축사업 : 100억원 이상

○ '09.9 현재 총 1,149개 사업, 총사업비 총액은 242조원 수준

- 토목 : 850개, 222.4조원

- 건축 : 268개, 19.5조원

□ 총사업비 관리내용·절차

○ 각 중앙관서가 사업추진단계*별로 사업규모·총사업비·사업기간을 재정부와 협의, 총사업비 등 변경시에도 재정부와 미리 협의

* 사업구상 → 예비타당성조사/타당성조사/기본계획 수립 → 기본/실시설계 → 발주 및 계약 → 시공 → 완공

○ 총사업비는 공종별·사업내역별로 독립 관리, 공종·내역사업간 사업비 임의조정 금지

① 제도상 미비점 보완 및 총사업비 증액 유발요인 개선

- 부실감리자(민간) 및 법정수탁기관(공기업)의 부실설계·감리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
- 연약지반 등에 대한 조사비용의 실비반영 근거 신설
- 물가인상분 반영 적용지수 변경(건설업 GDP디플레이터 →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)
- 각 사업부문별 사업내역(공종)을 표준화하여 사업내역(공종)에 대한 표준 분류체계에 따라 총사업비를 등록 관리

② 사업추진지연 완화를 위해 자율조정범위 및 절차 개선

- 중앙관서 자율조정 항목(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등) 일부 조정
- 자율조정한도 미 설정 항목(물가변동, 경유세율 변경 등)은 발주기관 선 조정 후 중앙관서 통보

③ 탄력적 재정운영 지원

- 공공부문에 대한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민간 선투자 인센티브율 상향 조정*, 선투자 인정기간 단축**
 - 초과시공한 대가금액의 4%, '09말까지 국고채(3년물) 평균수익율 → 4% 또는 국고채(3년물) 평균수익률 중 큰 값
 - 기성후 대가지급 소요일 : 6개월이상 → 3개월 이상
- 재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금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자율조정 한도액(낙찰가의 10%) 적용 유예 기한을 6개월 연장('09.12.31 → '10.6.30)